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7. 12 선고 2021가단127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피 고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E생)이 2019. 2. 25. 체결한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각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9. 6. 28. 접수 제141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28. D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20. 9. 30.,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D이 이 사건 대여금을 갚지 않자 이 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2. 10. 이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0가단12474 판결).

다.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22. 7. 7.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춘천지방법원 2021나31471 판결),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19. 2. 25.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하고, 2019.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4188호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D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8.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6,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이후에 성립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사정 및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의 시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성립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D은 자신 명의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하여 오다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위 호텔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2. 25. 자신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G, C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 피고는 2019. 3. 13. 평창군수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양수 신고를 하였고, 평창군수는 2019. 3. 1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 그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위 ‘F호텔’로 이용되고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위 건물의 대지이다.

○ 원고는, D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별지

목 록

1. 강원 평창군 H 대 974㎡

2. 위 토지 지상

[도로명주소] 강원 평창군 I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라브위 아스팔트형글지붕 5층

숙박시설 및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지1하 583.51㎡

1층 373.21㎡

2층 333.81㎡

3층 333.81㎡

4층 333.81㎡

5층 299.72㎡. 끝.

